

ChungNam Report

충남리포트 Vol.260

2017. 4. 20.

충남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황 및 개선방안

이민정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초빙책임연구원

minjoung1006@cni.re.kr

본 연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충청남도 교부 상황 및 유사한 일본사례 비교를 통해 동 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제언하는 것임.

CONTENTS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2. 충남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현황 및 문제점
3. 일본 유사정책 사례
4. 정책 제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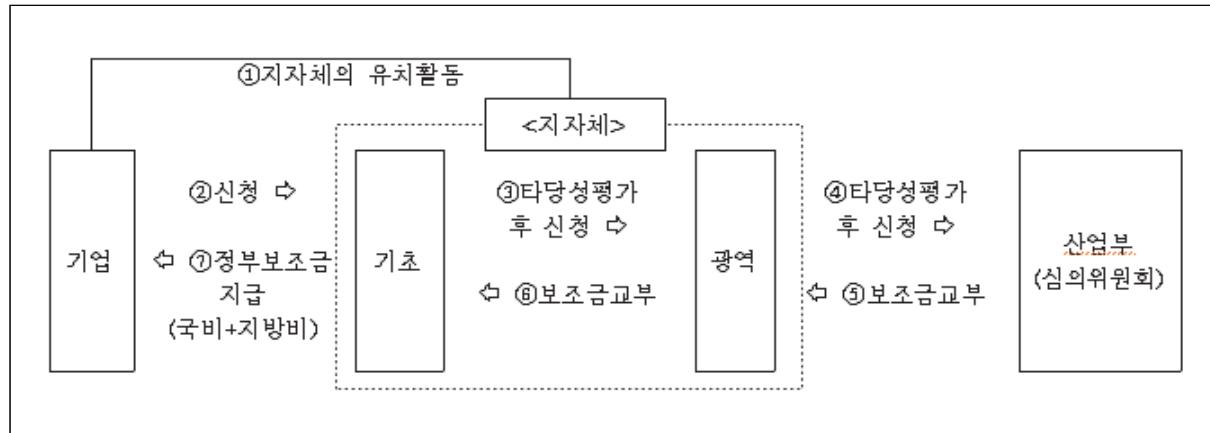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유치과정에서 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으로,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지원됨. 보조금 대상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비수도권에서 신·증설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임
- 충남은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와 동 보조금의 '수도권 인접지역' 분류에 따른 이중고는 물론, '보조금상한제' '보조금지원실적 저조지역 우대제도' 등으로 역차별을 겪고 있음.
- 일본의 지방이주기업 지원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선정책 (Two-track)으로 중앙정부는 전국 동일의 법제도 및 세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으로 지원함.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관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 지원내용이 유사해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린 산업입지와 기업유치를 수행하기 힘든 구조임.
- 동 보조금은 전년도에 매칭 지방비를 예측하여 산업부에 신청하는 방식 이므로, 기업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음. 과거 수도권 규제에 따른 기업이전을 기대하던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충남의 자원과 행정서비스 지원을 총동원한 적극적 기업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함.

0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9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17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에 근거.
 - 지자체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 비수도권 신·증설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을 지원
 - 지자체가 MOU 체결 등을 통해 유치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 심사를 거쳐 선별 지급

[그림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절차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의 2가지 유형으로 지원
 - 일반지역,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표 1] 지원내용(기업기준)

구 분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산·증설 투자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30인이상(기존사업장) 지방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할 것 <p>* 보조금 신청 또는 착공 신고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의 활동을 통해 유치한 기업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10인이상(기존사업장) 투자금액 10억원이상(중소·중견 기업), 대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로 인한 신규고용 10%이상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투자사업장) 기존사업장 유지할 것 <p>* 보조금 신청 또는 착공 신고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의 활동을 통해 유치한 기업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중소·중견기업 해외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 영위 국내에 기존사업장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 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산 또는 양도할 것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도권에 산·증설 <p>* 기존 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복귀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지원 종류 및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지원: 30%이내(중소) 10%이내(중견) 설비투자: 14%이내(중소) 11%이내(중견) 8%이내(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비투자 : 14%이내(중소) 11%이내(중견) 8%이내(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지원 : 30%이내(중소) 10%이내(중견) 설비투자 : 14%이내(중소) 11%이내(중견) 8%이내(대기업)

[표 2] 지원내용(입지지역기준)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 비율			국가의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지원 우대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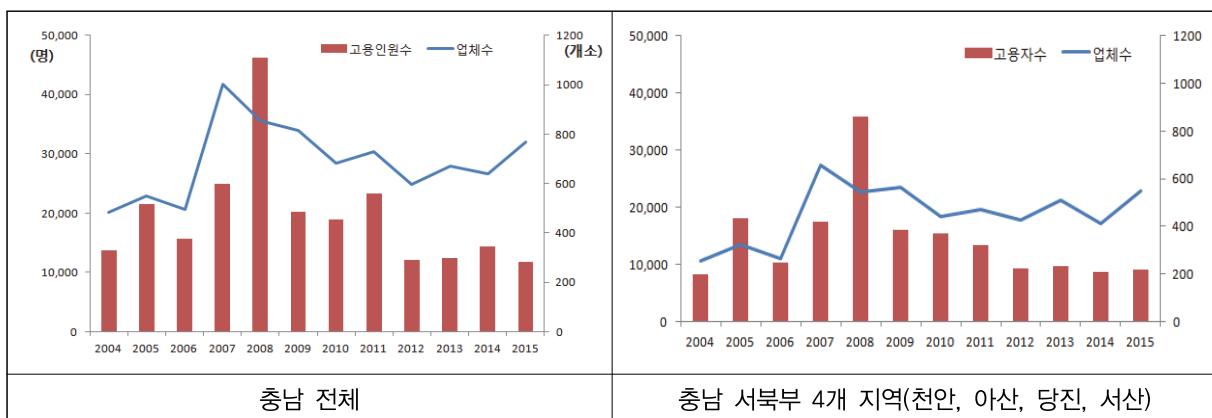
02

충남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기업유치는 대상지역과의 거리, 교통, 관련 산업의 집적정도, 대학 및 연구소 등 입지여건의 영향을 받음.
 - 충남 기업유치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지역에 2/3 이상이 입지(그림 2 참조)
 - 수도권입지규제 완화 이후 충남의 유치기업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표 3]에서 보듯, 특히 수도권유치기업수가 급감하였고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2] 충남지역 유치기업수 및 고용자수 추이



[표 3] 충남의 연도별 수도권기업유치 실적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체수	482	548	495	1,004	855	817	683	729	596	671	640	770
수도권 이전기업	(22)	(73)	(114)	(378)	(292)	(282)	(200)	(92)	(69)	(38)	(32)	(30)

주) 수도권이전기업()은 업체수에 포함된 수치

● 보조금 취지의 변화

- 당초 보조금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였음.
- 현재는 보조금의 무게중심이 ‘이전기업 지원’에서 ‘지역고용창출’로 이동
- 2011년 이후, 입지보조금 신청이 감소하여 현재는 신·증설투자지원이 대부분임.
- [표 4]처럼 충남에서도 점차 투자, 설비보조금 지급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 충남의 보조금 지급현황 (2012~2015)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액	47,260	20,081	20,331	18,171
국비	24,816	12,317	11,511	11,138
도비	8,733	2,479	3,045	2,110
시군비	13,711	5,283	5,775	4,924
유형	입지(21) 투자(11)	입지(10) 투자(4) 설비(1)	입지(3) 투자(6)	입지(2) 투자(5) 설비(5)

2) 제도적 문제점

●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인접지역 분류의 이중고

-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8년 이후부터 충남지역 기업유치 실적 감소
- 서북부지역은 수도권규제완화의 영향에 더해 천안, 아산, 당진은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되어 보조금 차등 지급
- 예를 들어 당진시는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되어 서산시와 보조금 차이가 발생. 인접한 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반사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제도 개편에 따른 역차별

- 책임과 권한 관련: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결정권한은 산업부에 있는 반면, 보조금 지급 이후의 각종 관리업무는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고 있음. 권한과 책임의 이원화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 보조금의 지역별 편차 : 2010년 ‘보조금 상한제’ 도입으로 수도권 인접 광역지자체에 보조금 편중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이후 마련된 ‘보조금 지원실적 저조 지역¹⁾’ 우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음.
- 제도개정으로 신설된 ‘지원우대지역’에 충남과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역차별도 우려됨.

● 중앙집권적 제도운영

-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자체가 대행해주는 성격이 강함.
-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한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수준에 머무름.
- 지역투자에 대한 혜택은 해당지역에 귀속되므로 투자유치의 주체와 보조금 운영의 주체 모두 지자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3) 충남의 대응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발품행정”이 더욱 중요해짐

- 동 보조금은 지자체가 MOU를 통해 유치한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기업유치 및 확보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기업의 적극적 동참이 핵심임.
- 지방비 매칭을 전년도에 미리 예측하여 산업부에 신청하므로 지자체의 기업유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음.
- 그런 의미에서 기업유치, 기업투자를 위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발품행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보조금의 목적이 ‘이전기업 지원’에서 ‘지역기업 신증설 촉진’으로 바뀐 것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 또한 중요해짐.

● 지자체 주도의 보조금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건의

-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복선정책(Two-track)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 중앙정부는 전국 동일의 법제도적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을 살린 조례와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 개별기업을 지원함.

1)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의 5% 미만인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대. 해당되는 광역지자체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가 있었으나 제도 개편으로 제주는 ‘지원우대지역’으로 포함됨.

- 우리나라를 이 구조가 반대로 나타나, 중앙정부(산업부)가 보조금을 직접 주관하고, 지방정부는 대동소이한 지방세감면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름.
- 우리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린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산업입지와 기업유치를 시행하기 힘든 구조임.
- 지역주도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세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건의

- 매칭방식인 등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 불가
-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에 비례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모순 내포
-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방세수로 연결될 수 있는 ‘지방법인세²⁾ 신설’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 요구 필요 (송상훈 외, 2012; 경기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2014)

2) 현행 기업관련 조세(법인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국가-지자체간 배분비율은 90:10으로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노력이 지방세수에 미반영됨. 현재의 중구난방식 과세기준, 기업과세의 대표성 미흡을 시정하여,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을 지방세와 연계하고 세수를 중앙-광역-기초단체 간 공동세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함.

03

일본 유사정책 사례

- 일본은 전후(戰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산업진흥 도모를 위한 산업입지정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음.
 - 1950년대까지 4대 공업지대(케이힌, 츄쿄, 한신, 키타큐슈)에 인구 및 산업의 과다집적 발생
 - 1960년대부터 공장 지방분산이 촉진되면서 1972년 ‘공장배치촉진법’이 제정. 이에 근거해 1973년 ‘산업재배치촉진비보조금’ 설치(2005년까지 교부)
 - 2000년대부터는 지역의 자립촉구 정책으로 무게중심 이동

1) 기업입지촉진법

- 2007년 제정된 동법은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및 시정촌(기초지자체)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동의를 얻으면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역의 주체적, 계획적 기업입지활동 촉진. 지역경제의 자율적 발전기반 강화 도모
 - 지역의 특성 및 장점을 반영한 개성있는 산업집적 형성 및 활성화 지향
- 지원절차
 - 자체 :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작성
 - 사업자 : 기업입지계획, 사업고도화계획 작성 후 광역지자체장이 승인

2) 지방거점강화 세제

- 지방창생(地方創生)에 관한 시책의 일환으로 2015년 설치
 - 안정된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방으로 인구유입 유도 목표
 - 지방에서 본사기능을 가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지역재생계획에 넣어,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우대조치함
 - 4가지 우대조치 : 시설 신증설에 대한 과세특례, 종업원 고용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채무보증, 지방거점강화에 관계된 지방세 불균형 과세

3) 지자체 보조금 (오카야마현 사례)

- 오카야마현 : 츠고쿠(中國) 지방에 위치한 인구 192만의 광역지자체
 - '기업입지가이드' 홈페이지(<http://yappari-okayama.com/>)에서는 방문자가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입지희망 산업단지 및 수혜가능 보조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구성(그림 3)
 - 지자체 기업유치 목표에 맞춘 다양한 보조금 정책, 우대제도 마련(표 5 참조)
 - 미래산업으로 지정한 특정업종(신재생에너지 분야, 차세대자동차 및 항공기 분야, 식료품제조업 분야)에 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그림 3] 일본 오카야마현 홈페이지 (기업보조금 시뮬레이션)

<p>1. 工業団地をお選びください ブルタウンメニューから工業団地を選んで次へボタンを押す、もしくは地図から工業団地をアイコンを選んでクリックしてください。</p> 	<p>2. 物件をお選びください ブルタウンメニューから区画を選んで次へボタンを押す、もしくは地図から区画を選んでクリックしてください。</p> 
1단계 : 산업단지 선택	2단계 : 물건 선택

<p>3. 下記、A、Bの項目を入力してください。</p> <p>[岡山リサーチパーク 19号地] の 土地取得価格は 10,326万円 で、総面積は 3,918m² です。</p> <p>A. 新規に立地する業種について下記からお選びください</p> <p><input type="radio"/> 食料品製造業(E) <input type="radio"/> 新エネルギー関連・次世代自動車・航空機関連分野(F) <input type="radio"/> 特定業種以外の一般製造業(G) <input type="radio"/> 研究所等(H) <input type="radio"/> データセンター(I) <input type="radio"/> 物流・流通業(J)</p>	<p>補助金 シミュレーション 結果</p> <p>試算日: 2016.08.24</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物件情報</th> <th colspan="2">■面積等</th> </tr> </thead> <tbody> <tr> <td>名称</td> <td>岡山リサーチパーク 19号地</td> <td>総面積</td> <td>3,918m² 1,195坪</td> </tr> <tr> <td>事業主</td> <td>岡山県</td> <td>平地</td> <td>3,265m² 998坪</td> </tr> <tr> <td>所在地</td> <td>岡山市北区富吉3204</td> <td>法面(下法)</td> <td></td> </tr> <tr> <td>地目</td> <td>雑種地</td> <td>法面(上法)</td> <td></td> </tr> <tr> <td>分譲単価</td> <td>31,500円/m²(104,132円/坪)※H24.4現在</td> <td>緑地(保安林)</td> <td>653m² 198坪</td> </tr> <tr> <td>備考</td> <td></td> <td>進入路</td> <td></td> </tr> </tbody> </table> <p>■試算要件</p> <p>【業種】研究所等 土地代(概算) 103,259,000円 設備投資額(建屋) 75,000,000,000円 設備投資額(設備) 50,000,000,000円 新規常用雇用者数 100人</p> <p>該当する補助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新企業立地促進補助金: 300,000,000円 <p>シミュレーション結果は概算値です。分譲単価は目安であり、売却時に改めて不動産鑑定を行います。試算結果は、補助金額の交付をお約束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p>	■物件情報		■面積等		名称	岡山リサーチパーク 19号地	総面積	3,918m ² 1,195坪	事業主	岡山県	平地	3,265m ² 998坪	所在地	岡山市北区富吉3204	法面(下法)		地目	雑種地	法面(上法)		分譲単価	31,500円/m ² (104,132円/坪)※H24.4現在	緑地(保安林)	653m ² 198坪	備考		進入路	
■物件情報		■面積等																											
名称	岡山リサーチパーク 19号地	総面積	3,918m ² 1,195坪																										
事業主	岡山県	平地	3,265m ² 998坪																										
所在地	岡山市北区富吉3204	法面(下法)																											
地目	雑種地	法面(上法)																											
分譲単価	31,500円/m ² (104,132円/坪)※H24.4現在	緑地(保安林)	653m ² 198坪																										
備考		進入路																											
3단계 : 필요항목 기입	4단계 : 시뮬레이션 결과																												

● 시사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선 정책 운영으로, 중앙정부는 법제도 및 세제지원 중심, 지방정부는 조례와 보조금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로 갈수록 큰 틀의 법제도적 지원에서 개별기업 당 지원으로 해당대상 및 지원범위가 명확해지는 구조
- 우리나라는 개별기업 대상의 보조금을 중앙정부가 소관, 지자체는 대동소이한 지방세 감면 지원의 구조로, 지역 간 차별성이 없고 효과에 대한 평가도 회의적
-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자체적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의 미래상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 방향에 맞춰 기업입지 유도 필요
- 더불어 오키야마 기업입지가이드 홈페이지처럼 기업들이 쉽게 지원제도, 수혜가능 보조금, 분양정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지역 충남'의 이미지 정립에 유리할 것임.

[표 5] 일본 오카야마현 기업입지 우대제도

분야	명칭	내용	
각종 보조제도	대규모공장 등 입지촉진보조금	일반 제조업 및 미래성장이 기대되는 특정업종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경우, 최대 70억 엔 교부	
	기업입지촉진보조금	토지에 관계된 고정자산평가액 또는 토지취득비 중 낮은 금액의 3%, 가옥에 관계된 고정자산평가액의 9% 등, 최고 5억 엔 교부	
	물류시설유치촉진보조금	토지에 관계된 고정자산평가액 또는 토지취득비 중 낮은 금액의 3%, 가옥에 관계된 고정자산평가액의 4.5% 등, 최고 3억 엔 교부	
	거점공장화 등 투자촉진보조금	이미 현(縣)내에 입지하고 새롭게 현내에 제조거점을 설립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가옥, 상각자산 취득액의 15%, 최고 5억 엔 교부	
	본사기능이전촉진보조금	현내로 본사기능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설비, 토지, 경비, 고용 등에 대해 최고 5억 엔 교부	
	지점 등 신규개설촉진보조금	현내에 지점 등을 새로 기설하는 법인 혹은 폐지했던 지점을 3년 이후에 다시 개설하는 법인에 대해 최고 200만 엔 교부	
	본사기능이전관련 사택임차지원보조금	본사기능이전촉진보조금 인정법인에 대해 상한 3000만 엔(1호당 월5만 엔) 교부	
	재투자서포트보조금	현내에 기 입지한 제조업자로 사업소 설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기업 등에 대해 상한 1억 엔 교부	
	데이터센터구축 등 지원보조금	현내에 데이터센터를 신규로 정비(증설 포함)하고, 이를 이용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용 등에 관계된 추가적 정보처리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제도	
	보조금 시뮬레이션	간단한 조작으로 입지지역, 혜택 보조금 및 금액 등의 정보 구득 가능	
세제 우대제도	과소지역 우대조치	각 법률에 근거한 개발지역에 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기업입지촉진법	기본계획 내용 열람가능	
분양제도	용지 구입	일괄분양제도	일괄분양
		임부특약부 분양제도	10년 상한으로 임대하여 기간 만료시 분양
		할부분양제도	10년(3년 이상의 원금거치기간 포함) 이내 할부분양
	용지 임차	사업용 임차제도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사업용 차지(기간 만료시 갱지로 반환)
	분양시뮬레이션		산업용지 중, 현영산업단지에 입지할 경우 토지대금에 관해 지불방법, 금액 등을 개선
국가 제도			고용기회가 특히 부족한 지역에 사업소를 설치, 정비하여, Hello Work(국가운영 공공직업소개소) 등의 소개를 통해 대상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사업소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및 Hello Work 소개로 채용한 노동자 인원수에 따른 장려금을 최대 3년간(3회) 지급
특례			현내 공장입지법 지역준칙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에 대해, 녹지면적률 및 환경시설면적률에 대한 특례. 공장단지특례 적용받는 공장용지 정보 제공

04 정책 제언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비 매칭을 전년도에 미리 예측하여 산업부에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기업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음.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소위 “발품행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수도권 입자규제와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에 기대어 수도권기업 이전을 기대하던 종래의 “천수답”식 기업유치방식에서 탈피하여 충남의 각종 지원과 적극적 행정서비스 지원을 총동원하는 “수리답”식 기업유치 및 신증설 지원이 요구됨.
- 반면, 이 보조금은 매칭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유치 노력에 비례하여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므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유치기업 수를 감안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음.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방세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예. 지방법인세 신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 있음.
 - 현행 기업관련 조세의 90%는 국세인 법인세로 지자체의 기업유치노력이 지방세수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유치한 기업의 납세를 통한 재정적 보전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지방세수 확보→지역 내 재투자 확대’라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업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건의
-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제도적 지원을,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조례제정과 다양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임. 지자체가 지역의 미래상과 산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 및 보조금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예를 들어, 오카야마현의 경우, 미래산업으로 지정한 업종(신재생에너지 분야, 차세대자동차 및 항공기 분야, 식료품제조업 분야)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충남의 미래상을 제시한 ‘충남경제비전 2030’에서는 아산만 프로젝트(아산만권 메가클러스터 조성),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미래에너지 및 해양신산업 육성), 행복공동체 프로젝트가 3대 선도프로젝트로 제시됨.
 - 이와 관련되는 지역, 업종, 기업 등을 구체화하고, 보조금 담당공무원은 적극적으로 기업 이전 및 지역투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현재의 보조금제도 상에서 충남도가 할 수 있는 내용임.
 - 더불어, 현재 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go.kr)의 ‘기업지원금 계산하기’를 보완하여 기업들이 쉽게 지원제도, 수혜가능 보조금, 분양정보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구축홍보해야 함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직접 소관하고 지자체는 대동소이한 지원(지방세감면 등)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이 장점과 특색을 살린 미래상을 그리고 산업입지와 기업유치를 수행하기 힘든 구조임.
 - 기업의 입장에서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전을 고려할 때 기업여건과 장래성을 감안해 특정지역을 선택할 유인이 적음.
 - 자체 주도의 보조금 운영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

이 민 정 초빙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72, minjoung1006@cni.re.kr

* 본 연구는 충남연구원 2016년 전략과제 “충청남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요약재구성함.

참고자료

경기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2014. “지자체 기업유치노력, 지방세 연계필요”. 「ISSUE & ANALYSIS」, 경기연구원.

김광국. 20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이분석과 제도개선 과제”, 『산업입지』 56권, 한국산업 입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201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부개정령안

송상훈 외. 2012. 「지방법인세 도입의 논리와 과세방안」, 경기연구원.

홍진기. 2012.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KIET 산업경제」, 2012년 9월호, 산업연구원.